

식품위생법령개정에 따른 운용지침

[위제 31150—5808 : '90. 5. 7]

이 資料는 보건사회부에서 발간한 「식품위생업무지침」의 내용을 전재한 것으로 식품제조업체의 관련업무에 도움을 주기위해 전재합니다.

1. 영업허가관청 변경에 따른 조치(영 제53조, 영부칙 제2조, 규칙부칙 제2조)

- 가.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관청이 변경된 경우 종전의 허가(신고)관청은 영업의 허가(신고)에 관련된 일련서류를 해당 허가(신고)관청에 인계할 것.
나. 인계받은 허가(신고)관청은 '90. 3. 31 까지 구영업허가증을 회수하고 개정된 법령의 관련규정에 따라 영업허가(신고)증을 새로 교부할 것.

2. 신설 또는 변경된 업종의 허가관리(영 제7조, 영부칙 제3조 내지 제5조, 규칙 제20조의 별표 8, 규칙부칙 제6조)

- 가. '89.11.30이전에 허가를 받은 영업중 업종이 변경된 다음의 영업에 있어서 시설기준중 작업장 면적기준이 종전보다 확장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작업장 면적외의 시설은 개정된 기준에 따라 정한 기일내에 갖추도록 조치할 것.

- (1) 김치제조업(영 제7조 제1호 아목)
(2) 건강보조식품제조업(영 제7조 제1호 러목)
(3) 특수영양식품제조업(영 제7조 제1호 머목)
(4) 식품가공업중 떡류임가공업 및 산양

임가공업

- [영 제7조 제1호 (1)커목 (1)임가공업]
나. '89.11.30이전에 영업허가와 품목제조 허가를 받아 제조하는 품목들이 개정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영업시설기준을 공동으로 적용하여 관리할 것. 다만, 식품제조 및 검사에 있어서 공동 사용이 불가능한 기본기계, 기구 및 설비는 별도로 갖추도록 할 것.

- (1)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절임식품제조업 허가를 받아 제조하는 식품 중 영 제7조 제1호 사목의 절임식품류제조업과 아목의 김치제조업에 해당하는 식품을 함께 제조하는 경우

- (2)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영양등 식품제조업 허가를 받아 제조하는 식품 중 영 제7조 제1호 러목의 건강보조식품제조업과 마목의 특수영양식품 제조업에 해당하는 식품을 함께 제조하는 경우

다. 식품조리·판매업(영 제 7 조 제 8 호)

- (1) 일반조리·판매업
(가) 일반조리·판매업에 해당되고 다른 식품접객업 또는 식품제조·가공업(식육제품제조업 및 어육연제품제

조업과 유사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영업으로서 객석이 없고 주류를 판매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동 영업으로 허가 관리할 것.

(나) 그외의 영업은 종전과 같이 대중 음식점 영업으로 허가관리 할 것.

(2) 이동조리·판매업

종전처럼 식품영업허가제한기준(보건사회부 고시)에 따라 영업허가 제한업종으로 관리 할 것.

(3) 출장조리·판매업

(가) 개정규칙 시행당시 영업을 하고 있는자에 대하여는 '90.7.10까지 개정된 규정에 의한 영업시설을 갖추도록 하여 새로 허가할 것.

(나) 신규영업자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관리 할 것.

라. 식품소분·판매업의 신고관리(영 제7조 제4호, 영 제9조, 영 제13조, 영 부칙 제1조, 제3조, 제5조 및 규칙부칙 제2조, 제6조)

(1) 식품소분업

(가) 1990.3.31까지 종전의 영업허가증을 회수하고 개정규정에 의하여 영업신고증을 교부할 것.

(나) 개정된 시설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90.12.31까지 개정된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조치할 것.

(2) 식품판매업중 기타식품판매업

(가) 신고대상영업은 도·소매업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소매점

(영 제11조, 제12조 및 별표1, 별표2) 및 도매센타(영 제17조 및 별표3)로서 동법 제15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허가를 받은 영업소 중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소

○ 대규모소매업: 백화점, 쇼핑센타, 대형점

○ 도매센타(나) 동 업소에서 식품접객업, 식품소분업을 하는 경우에는 업종별로 각각 영업의 허가 또는 영업신고를 받아 관리할 것.

(다) 식품판매업은 식육판매업,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식용얼음판매업, 수입식품등의 판매업과 유가공품·유산균음료등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은 각각 영업의 신고를 받아 관리하고 그외의 여러가지 식품을 종합적으로 취급하는 기타식품판매업은 하나의 업종으로 신고관리 할 것.

(라) 행정처분도 신고받은 세부 업종별로 관리할 것.

신고대상의 대규모 소매점 및
도매센타의 종류, 면적 및 시설기준

(도·소매업 진흥법 시행령 관련)

(3) 자동판매기 영업

(가) 시설기준의 일부개정과 영업자준수 사항을 신설하였으므로 동 규정에 적합하게 신고수리하고 사후 지도·감시할 것.

(나) 다만, 시설기준중 구조변경이 필요한 (2), (3), (4), (7)의 개정규정

[별표 1]

대규모소매점의 종류 및 내용(제11조관련)

종 류	내 용
백화점	각종 상품을 부문별로 구성하여 최종소비자로 하여금 일괄 구매할 수 있도록 직영·위주로 형태로 운영하는 대규모점포
쇼핑센타	백화점·수퍼마켓등 혼합점포가 있고 각종 전문점과 편의점·공공시설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통일적으로 관리·운영되는 직영 또는 임대형태의 소매업집단
대형점	대중종합점·염매점·수퍼마켓·전문점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하나의 점포의 규모가 별표2의 매장면적이상인 대형소매점

〔별표 2〕

대규모소매점의 매장면적 및 시설기준등(제12조관련)

종 류	매 장 면 적(m ²)	운 영 체 제	시 설 기 준(공통)
백화점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3,000이상 기타 지역의 경우는 2,000이상	매장면적의 50%이상 직영 상시종업원의 5%이상 판매사 고용	1. 점포기본시설(상품진열대·내장·간판 ·안내판·셔터·표지물) 2. 상·하수도시설 3. 전기시설 4. 주차시설 5. 위생시설(층별 남녀구분 수세식화장실 ·오돌수거장·공동작업장등) 6. 집중 냉·난방시설(층별 냉·난방시설 을 포함) 7. 방송시설 8. 관리사무실 9. 문화행사시설(대형점의 경우는 제외) 10. 소비자보호시설(상담실·휴게소·자유 계량대·공중전화등)
쇼핑센타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3,000이상 기타 지역의 경우는 2,000이상	임차건물의 경우는 매장 면적의 30%이상 직영 상시종업원의 5%이상 판매사 고용	
대형점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1,000이상 기타 지역의 경우는 700이상	매장면적의 50%이상 직영 상시종업원의 5%이상 판매사 고용	

〔별표 3〕

도매센타의 매장면적 및 시설기준등(제17조관련)

구 分	기 준
매장면적	3,000m ² 이상
운영체제	임차건물의 경우에는 10%이상 직영 상시종업원의 5%이상 판매사 고용
시 설	1. 점포기본시설 2. 종합전시장 3. 하역시설 4. 보관시설(별도의 건물로 할 수 있다) 5. 전산시설 6. 주차시설 7. 부대시설(식당·휴게소·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수세식 화장실등) 8. 관리사무실

은 1990.12.1부터 적용. 시행하며,
1990.12.1이후에 설치하는 모든 자판
기(교체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개정 규정에 적합해야 하므로 영업신
고관청은 해당영업자에게 지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다) 설
치장소 및 보호시설

① 옥내에 설치하는 경우

화장실 출입문에서 보이는 곳에 설
치하는 경우에는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10m이상, 보이지 않는 곳
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문으로
부터 5m이상 떨어져야 한다.

②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

오물적치장등 악취가 발생하는 장
소로 부터는 20m이상, 화장실로
부터는 10m이상 떨어진 곳에 설
치하여야 하며 내수성자재가 아닌
바닥에 자판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표에서 5cm이상 높게
설치하여야 한다.

③ 비, 눈, 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차양시설은 내수성자재를
사용하여 자판기를 보호할 수 있어
야 하며 이용자에게 불편과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구조 이어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지역설정과 거리미관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기준을 마련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④ 국민학교 학생용으로 설치하는 자판기는 학교내와 학교정문으로부터 20m 이내에 설치한다.

(라) 자판기 구조

① 더운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외부에서 이용자가 그 온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온도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자판기의 투명구조는 자동판매기 원료보관함 내부를 충분히 볼 수 있도록 50cm(사각형, 원형등) 이상 면적의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커피, 분유, 스프등 분말식품을 별도의 온수 또는 냉수에 희석시켜 판매되는 자판기에 한한다.

③ 물탱크는 내부청소가 용이하도록 탱크입구의 지름이 10cm 이상이어야 하고 뚜껑이 있어야 한다.

④ 실균등은 냉음료용 자동판매기에 부착한다.

⑤ 식품에 물을 희석하여 판매하는 자판기에는 정수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마) 자판기에 부착하는 영업신고사항 및 점검표의 크기는 가로 10cm, 세로 5cm크기로 각각 제작되어야 한다.

(바) 자판기 임검

분기별로 최소한 1회이상 임검토록 하고 도로변, 시장, 지하철내외등 이용이 많고 위생관리상의 문제발생 우려가 높은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자판기에 대하여는 별도의 특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사) 자판기의 고유관리번호 부여

① 각 영업신고관청별로 자판기의 고유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한다.

② 자판기 관리카드(대장)을 작성하여 기록관리 한다.

○ 고유관리 번호

○ 기계제작 년·월

○ 신고번호 및 신고일(설치일) ○ 신고자 주소·성명

○ 설치장소 및 주변상황

○ 기계제작사, 기종 및 기계고유번호

○ 관리자 및 연락전화번호

○ 판매품목

(4) 식품판매업(백화점등 대규모식품소매점)신고를 한 업소의 단순가공영업 행위 관리(영 제7조 제1호 커목)

(가) 영업의 범위는 부형제와 첨가물을 넣지 아니하고 농·수산물을 단순히 절단·분쇄 및 이를 서로 혼합가공(허가를 받아 제조한 조미식품 또는 양념류 등을 혼합하는 경우 포함)·포장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나) 대상영업자는 동일건물내에서 식품판매업(기타식품판매업)과 식품소분업신고를 필한 자이어야 한다.

(다) 이경우 절단·포장등 가공행위는 식품소분업의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라) 제품은 당해 판매업소 이외의 장소에서는 판매할 수 없으며, 규칙 제5조 [별표 2]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를 하여 판매하도록 할것.

(마) 신고관청은 관련규정 및 이지침에 적합하게 영업하는지의 여부를 수시로 임검·지도 하여야 한다.

마. 절임식품제조업 및 김치제조업

(1)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절임식품류제조업 허가를 받은 영업자중 영 제7조 제1호 아목의 김치제조업에 해당하는 제품을 제조하는 영업자에 대하여는 '90.3.31까지 영업허가증을 교부할 것. 다만, 개정된 시설기준에 부적합한 업소에 대하여는 '91.1.10까지 적합한 시설을 갖추도록 허가조건을 부여할 것.

(2) 앞으로는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하여 시장내에 위치한 영업소의 작업장 면적에 관한 예외규정(30제곱미터이상)은 삭제되었으니 신규허가시 확오가 없도록 할 것.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업소의 작업장 면적에 대하여는 종전규정을 적용할 것.

바. 식품운반업의 허가관리(위제 31150-15781호, '89.12.8 참조)

(1)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자신이 직접 운반하거나 당해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식품운반법 허가대상은 아니나 운반중 부패·변질 등 위생상 위해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적 관리 의무를 다하도록 할 것.

(2) 특히 직접 마실수 있는 유가공품, 유산균음료나 식육·어육·조개류 및 그 가공품등 부패·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20조 및 [별표 8]〈업종별 시설기준〉 2. 식품운반업의 시설기준 중 가. 운반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운반하거나 식품운반법 허가를 받은자의 운반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동법시행규칙 제40조[별표12]의 (식품제조·가공업자의 준수사항) 제2호 규정 또는 제42조[별표13](식품소분·판매운반업자의 준수사항) 제3호 규정위반으로 보아 행정처분하고 세차는 허가받은 세차시설(적재고의 세차는 수도물 또는 음용에 적합한 물을 사용)을 이용하도록 지도 함으로써 식품을 비위생적시설(비냉장차량, 트럭, 오토바이, 자전거등)로 운반하고 아무곳에서나 세차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단속할 것.

사. 대중음식점 영업의 시설관리

'89.11.30 이전에 허가를 받은 대중음식점중 개정규정에 부적합한 시설(객실의 측광조절장치, 시전장치, 칸막이설치)의 업소에 대하여는 '90.3.31까지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시정하도록 조치할 것.

아. 다류와 청량음료제품의 허가관리

(1) 다류로 관리되던 분말청량음료를 청량음료로 관리

(2) 이미 보편화된 커피, 올무, 들깨, 현미등의 분말제품은 종전과 같이 다류로 관리한다.

(3) 직접 마실 수 있는 액상으로서 커피, 생강, 영지(부원료), 오미자 및 감초, 작약등 쌍화차 원료인 식물성 원료를 사용하고 향료를 사용치 아니한 제품은 다류로 관리하여 청량음료와 구분.

(4) 과실차의 경우 통상 직접먹지 아니하는 유자, 모과등을 원료로하고, 향료를 사용치 아니한 제품은 다류로 관리하여 청량음료와 구분.

3. 식품가공업의 허가관리(영제7조, 영부칙 제3조, 규칙 제4조, 규칙부칙 제6조)

가. 식품가공업(임가공업은 제외한다)으로서는 생약재를 원료로 사용하여 식품을 가공하여 유통판매 할 수 없는바, 생약재등 식품의 원료로 보편화 되어 있지 아니한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허가나 신고를 수리하지 말것.

나. 다만 생약재 여부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리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할 것.

다. 기타식품 가공업으로 식품을 가공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가기준 및 규격을 인정받아 허가 또는 신고 수리할 것,

라. 임가공업

(1) 떡류임가공업

(가) 양곡관리법에 의하여 제분업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떡류임가공업소에 대하여는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

신고증을 회수하고 '90.7.10까지 개정된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도록 조건을 부여하여 '90.3.31까지 영업허가증을 교부할 것.

(나) 동 영업은 임가공업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당해 업소에서 가공한 것을 당해 업소내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진열·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유통판매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지도·감시를 할 것.

(2) 산양임가공업

(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업소에 대하여는 '90.7.10까지 개정된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도록 조건을 부여하여 '90.3.31까지 영업허가증을 교부할 것. 다만, 영업장 면적은 종전의 기준에 의할 수 있다.

(나) 산양임가공업은 소비자의 요구에 의한 임가공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당해영업자가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산양과 식용으로 상용되는 원료(대추, 생강, 들깨, 밤, 인삼, 갈근, 영지등)를 직접 조달하여 임가공 할 수 있으며, 소비자가 구입한 원료를 직접 가져와 산양과 함께 임가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대로 임가공하여 줄 수 있다.

(다) 동업소에서 가공한 제품은 유통·판매할 수 없으니 지도·단속을 철저히 할 것.

(라) 생약(한약)재를 업소내에서 진열·판매하는 사례가 업도록 지도할 것.

4. 전통(토산)식품의 허가관리(영 제13조, 제3호, 규칙 제20조, 규칙 제27조 제3항)

가. 전통(토산)식품의 지정

(1) 전통(토산)식품은 타지방에서는 일반적으로 제조·가공되지 아니하는 식품으로서 제조·가공 및 품질상의 특성이 있고 전통성, 역사성 및 고유성을

가진 식품을 지정하므로 전통(토산)식품 지정을 남발하지 말 것.

(2) 전통(토산)식품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관내 유관기관, 유관부서, 관련단체, 학계, 연구기관등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결정하고 허가관청이 보건사회부장관인 영업 및 품목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전통식품지정여부를 결정할 것.

나. 영업 및 품목의 허가(신고)관리

(1) 규칙 제27조 제3항[별표10]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허가관청: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 대상영업자 및 품목: 별표10)에만 당해 영업 및 품목의 허가관청별로 신고 수리할 것.

(2) 위(1)에 부적합 경우에 대한 허가관리

(가) 허가관청이 보건사회부장관인 경우에는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영업허가와 품목제조허가(다만, 품목이 별표9에 해당되는 때에는 신고)를 받아야 함.

(나) 허가관청이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인 경우에는 위(가)와 같이 처리할 것.

(다) 위 (가) (나)의 경우에 있어서 시설기준은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보건사회부장관 허가업종) 또는 시·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작업장면적은 [별표8]의 업종별 시설기준에 의한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범위내에서 보건사회부장관(보건사회부장관 허가업종)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니 착오 없도록 할 것.

5. 수입식품 판매업 신고관리

가. 신고관청은 다음시설을 갖춘경우에 신고를 수리할 것.

(1) 사무실(영업신고서 및 신고증상의 영업소 소재지로 기재)

(2) 보관시설(수입된 식품등의 보관 및 한글표시 작업을 할 수 있어야 함)

나. 사무실을 이전할 때에는 반드시 영업 장소변경 신고를 받아 무단 이전 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다. 신고 수리된 업소에 대하여 년2회 이상 업소점검 및 제품수거검사를 하여야 한다.

6. 품목제조 허가 및 신고관리

가. 품목제조허가증 및 품목제조신고증 교부(부칙 제24조, 규칙부칙 제3조)

(1)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제조허가를 받은 품목중 품목제조 신고대상으로 변경된 품목은 '90.6.30까지 품목제조신고증으로 서환 교부할 것.

(2)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품목제조허가 또는 품목제조 신고대상이 된 품목은 품목제조허가신청서 및 품목제조신고서를 접수하여 '90.6.30까지 품목제조허가증 또는 품목제조 신고증을 교부할 것.

나. 도시락의 품목제조허가 관리

(1) 도시락은 주원료군별로 중량만 표기하여 허가한다.

(예, 밥 : 500g, 김치류 : 50g, 생선류 : 80g, 육류 : 80g, 국 : 100g, 김 : 10g, 등)

(2) 동일영업자가 판매대상, 계절, 형태 등에 의한 다양한 도시락을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업자별로 연번호를 부여하여 허가관리 할 수 있다.

(예, 도시락1호, 도시락2호,……도시락 10호 등)

다. 다음의 영업에 있어서 품목제조허가를 한 때에는 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품목제조허가(신고수리)사항 보고를 생략한다.

(1) 압착식용유제조업(즉석제조·판매)

(2) 도시락제조업

(3) 식품가공업중 단순가공업

(4) 식용얼음제조업

라. 품목제조 허가(신고)사항 변경허가(신고)관리

규칙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제조허가사항 변경사항중 성상을 변경하는 경우는 변경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액상에서 고체(반고형)상태로 변경하거나 고체(반고형포함) 상태에서 액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개의 품목으로 허가 관리한다.

7. 유통기한 설정에 관한 경과조치(규칙 제5조의 별표2, 규칙 제25조 제1항 제3호, 규칙부칙 제5조)

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하고 있는 품목에 대하여는 매품목별로 규칙 제2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90. 6. 30까지 제조·가공업자로부터 품목별 유통기간 및 유통기간 설정사유서(식품공전에서 정하는 권장 기준을 초과해서 유통기간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기관 등의 실현·연구결과 등 과학적 입증자료를 징구하여 검토)를 징구하여 관리하고 영업자가 임의로 유통기간을 조정할 수 없도록 지도·감시할 것.

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하여 제조·가공하는 식품에 대하여 개정규정에 의한 유통기한만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품목의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개정된 부령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기간 및 유통기간 설정사유서를 제출한 후 표시·판매하도록 조치할 것.

다. 식품의 허가(신고)관청은 업소별, 품목별 유통기간을 파악하여 사후 관리할 것.

8. 업소임검(규칙 제12조 제1항)

가. 업소에 대한 정기임검은 연1회이상 실시할 것.

나. 국민보건위생상 필요한 경우 수시로 특별임검을 할 것.

다. 행정처분을 한 업소에 대하여는 그 처분일로부터 6월이내에 2회이상 반드시 임검토록하여 중점 감시할 것.

9. 집단급식소의 신고관리(영 제19조 제2항, 규칙 제42조 별표13, 규칙 제45조 제2항, 규칙 제58조 제2항)
- 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집단급식소에 대하여는 '90.3.31까지 집단급식소 신고증을 교부하고 중소기업의 집단급식소중 공동으로 영양사를 두는 경우 개정규정에 부적합할 때에는 '90. 6. 30까지 개정규정에 접합하게 영양사를 두도록 조치할 것.
- 나. 모든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에게 규칙 제42조 별표13의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자의 준수사항을 통보하여 이를 지키도록 지도·감시할 것.
10.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규칙 제40조의 별표12, 규칙 제42조의 별표13, 규칙 제53조의 별표15, 규칙부칙 제9조)
- 가. 각 영업허가관청은 해당 업종별로 동 개정규칙에 의하여 개정 또는 신설된 영업자 준수사항을 통보하여 이를 지키도록 지도·감시할 것.
- 나. 식품점객업소의 허가받은 영업외의 타영업시설을 설치하여 영업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등
- (1) 다방동 식품점객업소 및 식품조리·판매업소에는 전자오락기구를 일체 설치하지 못하도록 지도·감시를 철저히 할 것.
- (2) 전자오락기를 설치한 업소에 대하여는 다음기준에 따라 행정처분한다.
- (가) 도박성이 있는 사행행위(예: 고스톱기 설치영업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준수사항 제7호 위반으로 행정처분기준, II. 개별기준, 15, 가. (1)의 기준(1차: 영업정지2월, 2차: 영업정지3월, 3차: 영업허가취소)을 적용하여 행정처분하고 사직당국에 고발조치.
- (나) 그외의 전자오락기설치 영업행위에 대하여는 준수사항 제29호 위반

- 으로 행정처분기준, II. 개별기준, 15. 가. (3)의 기준(1차: 영업정지 15일, 2차: 영업정지 1월, 3차: 영업정지 2월)을 적용하여 행정처분하고 사직당국에 고발조치
- 다.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운반·진열·판매·재가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 (1)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제조·가공한 제품중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운반·진열·재가공하거나 판매(판매업소에 공급·판매한 경우를 포함한다) 하였을 때에는 식품 및 첨가물 제조·가공영업자의 준수사항 제13호 규정 위반으로 행정처분(1차 시정지시,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 15일) 할 것. 이 경우 제조·가공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제조·가공업자의 적영판매장, 대리점, 계열사 판매장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진열·판매한 경우를 포함한다.
- (2) 법 제22조 제5항, 영 제13조 및 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판매업신고 업소에서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진열·판매한 경우에는 당해 식품판매업 신고 영업자에게 식품소분·판매·운반업자의 준수사항 제1호 규정 위반으로 행정처분(1차: 시정지시,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 15일)하고, 식품판매업 신고제외대상 업소에서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진열·판매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할 수가 없으므로 당해 식품의 제조·가공업자로 하여금 자사제품의 유통관리를 철저히 하여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 할 것.
11. 식품등의 표시관리(규칙 제5조의 별표 2, 규칙부칙 제4조)
- 가. 식품등의 표시기준 규칙 제5조 별표2의 표시기준과 식품공전상의 표시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하고 규칙개정으로 식품등의 표시기준중 개별 표시기준에서 삭제된 일부품목은 식품공전상의 표시

기준과 중복되어 이를 삭제하였으므로 식품등의 표시관리에 차오 없도록 할 것.

나. '90.6.30. 이전에 제조한 식품등에 있어서 종전의 표시기준에 적합하게 표시된 경우는 표시기준 위반으로 단속하지 말 것. 다만, 종전의 표시기준에 따라 용기·포장을 미리 대량 제조하여 '90.6.30일 이전까지 이를 사용하지 못함에 따라 재고가 발생하여 경제적 손실이 없도록 해 당업소에 알려줄 것.

다. 유통기한의 표시

(1) 유통기한의 연도가 제조일이 속한 연도와 같은 연도인 경우에는 “○월 ○○일까지” 또는 “○○.○○까지”로 표시할 수 있으며, 제조일이 속한 연도와 다른 경우에는 “○○년 ○○월 ○○일 까지” 또는 “○○.○○.○○까지”로 표시하여야 한다.

(예시, “90년 10월 30일까지”, “90.10.30까지”, “1월31까지”, “01.31까지”)

(2) 제조연월일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조일로 부터 ○○일까지”, “제조일로 부터 ○○월까지”, “제조일로 부터 ○년까지” 또는 “제조일로 부터 ○○일”, “제조일로 부터 ○○월”, “제조일로 부터 ○년” 또는 “제조일로 부터 ○○일째 되는날”, 제조일로부터 ○○월째 되는날”, 제조일로부터 ○○년째 되는날”로 표시할 수 있으며, 유통기간이 2일미만인 제품은 “제조일시로 부터 ○○시간”으로 표시할 수 있다.

(3) 유통기한 표시글자(연·월·일 표시 숫자)크기는 4호활자이상(제품표시 표면적이 50제곱센티미만의 포장과 병마개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6호활자이상) 이어야 한다.

(4) 제품포장의 오른쪽 하단부에 유통기한을 직접 표시하지 아니하고 표시부위를 명시하여 다른곳에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표시 부위를 명

시하는 글자와 실제 표시하는 유통기한(연·월·일 표시숫자)은 4호활자 이상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유통기한 표시부위를 명시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 표시위치”와 “○○○○에 표시한 날(일)짜 까지”로 표시할 수 있다.

(5) 아이스크림류(분말 아이스크림류를 제외한다) 빙과류, 설탕, 식용얼음, 및 과자류중 겨류(12개 이하 낱개들이 소포장 제품에 한한다)는 유통기한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6) 영 제7조 제2호의 첨가물제조업 허가를 받아 제조하는 첨가물은 제조연월일만 표시할 수 있다.

12. 과징금부과 처분(법 제65조, 영 제38조의 별표, 제39조, 규칙 제53조의 별표15)

가. 과징금부과 결정방법 및 통지

(1) 영업허가(신고) 또는 품목제조허가(신고) 관청은 영업정지 또는 품목제조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64조 및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의 절차를 걸쳐 당해처분 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의한 과징금부과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민보건위생 증진, 공익증진, 법질서확립 및 과징금의 납부 능력등을 고려하여 행정처분의 실효를 거둘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 대상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처분관청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과징금부과 결정시에는 영업정지 또는 품목제조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처분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영업정지 또는 품목제조정지 명령서와 과징금 납입고지서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나. 과징금 부과처분 제외대상

(1) 법 제6조(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의 판매등 금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법 제58조 제1항에 해당하는 때(법 제65조 제1항)

- (2) 규칙 제42조의 [별표13] 식품접객영업자 및 식품조리·판매영업자의 준수사항 중 제7호, 제8조, 제14호, 제15호 및 제32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위제 31150-7802호, '89.6.14.)
- (3) 규칙 제53조 별표15의 행정처분기준에 의하여 동일사항의 3차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행정처분기준 I. 일반기준중 제7호 참조)
- (4) 규칙 제53조[별표15]의 행정처분기준, II. 개별기준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위반사항이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때에는 처분관청의 판단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호중 가목, 다목, 라목, 마목, 바목에 해당하는 때
 2. 제2호에 해당하는 때
 3. 제4호중 기목에 해당하는 때
 4. 제7호중 자목에 해당하는 때
 5. 제10호중 마목 및 차목의 (1)에 해당하는 때
- 다. 품목제조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 (1) 2이상의 품목이 품목제조정지 처분에 해당되어 동 품목제조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각 품목별로 산정한 과징금의 합계가 2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품목별로 품목제조정지등의 행정처분을 하므로 품목별로 각각 과징금을 부과한다. (위제 3115-14818호, '89.11.17. 참조)
- (2) 1회에 1개의 품목제조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는 2천만원을 부과한다.
- (3) 품목제조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품목제조정지 처분대상이 되는 당해 품목의 매출금액을 말한다.
- 라. 1회에 1개업종의 영업정지 처분에 갈 음한 과징금액 부과는 영 제38조 별표의 과징금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출하된 산출금액이 다음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이 기준 금액을 부과한다.
- (1) 제조·가공업(영 제7조 제1호 및 제2호의 영업) : 2천만원
- (2) 제조·가공업외의 영업(영 제7조 제1호 및 제2호의 영업을 제외한 영업) : 1천만원
- 13. 영업자 준수사항 통보(규칙 제40조의 별표12, 규칙 제42조의 별표13, 규칙부칙 제9조)**
- 가. 각 영업허가관청은 해당 업종별로 동 개정규칙에 의하여 개정 또는 신설된 영업자 준수사항을 통보하여 이를 지키도록 지도·감시할 것.
- 나. 식품접객영업소의 상호 간판표시에 관한 조치
- (1) 이 규칙 시행이전에 허가를 받은 식품접객영업소의 상호를 표방하는 간판을 '90.3.31까지 식품접객영업 및 식품조리·판매영업자 준수사항 제13호의 개정규정(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명 표시)에 적합하게 조치할 것.
- (2) 신규허가시에는 영업소 간판을 개정 규정에 적합하게 표시하여 설치토록 조치할 것.
- 14. 동·식품을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하는 식품관리(규칙 제4조 별표1)**
- 가. 자가기준 및 규격관리
- (1) 식품공전에서 식품별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져 있는 식품은 동원료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것이라도 별도의 자가기준 및 규격 검사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 (2) 자가기준 및 규격 검사대상 제품에 대한 동 원료의 사용에 관하여는 보건사회부장관이 승인한 국립보건원장의 식품 자가기준 및 규격검사기준에 명시되어 있으니 이를 참고할 것.
- 나. 품목제조허가 관리

- (1) 자가기준 및 규격검사 대상이 아닌 식품에 대하여 규칙 제4조 별표1에서 정하는 동·식물을 원료로하는 품목제 조허가(또는 신고)시에는 별도의 조치 지시가 있을때까지 다음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 (가) 식품원료로서의 사용이 유보되는 것(13종) : 고삼, 도인, 동충하초, 목향, 여정실, 유백피, 음양곽, 차전자, 천마, 토룡용, 행인, 향부자, 홍화
- (나) 주원료이외의 부원료로서 최소량을 사용할 수 있는것[(식품공전에서 별도 기준이 정하여진것은 제외)(22종)] : 구약괴근, 구판, 노루귀, 녹각, 녹용, 달개비, 당귀, 백봉령, 복분자, 사상자, 사인, 산사자, 삼백초, 삽주뿌리, 석창포, 숙지황, 알로에(외피 포함), 원지, 천궁, 측백엽, 토사자, 하수오
- (다) 별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18종) : 감초, 갈근, 결명자, 계피, 구약(잎 또는 괴근에서 전분이나 다당류만 분리한 것), 덩굴초, 두충, 박하, 산약(마), 삽주잎, 상백피, 알로에(외피 벗긴것), 오가피, 오미자, 오매(매실), 영지, 차전자껍질, 화분
- (라) 식품에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타 동·식물원료

①대한약전 또는 대한약전외 한약(생약)규격집에 수록된 원료인 경우 일상 식생활 관습상 널리 사용하는 것.

②보건사회부장관 또는 국립보건원장이 안전성과 건전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

(마) 약리작용과 효과만을 명백한 목적으로 하는 원료는 식품원료로 허가되지 않도록 한다.

다. '89.11.30이전에 허가를 받은 제품중 유가공품(영 제7조 제7호 라목의 유가공품제조업) 및 기타가공식품(영 제7조 제1호 커목의 식품가공업중 기타식품가공업)은 '90.8.30까지 해당 식품위생 검사기관으로부터 자가기준 및 규격을 인정받도록 지도할 것.

라. 식품가공업으로는 생약재를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을 제조·가공할 수 없는 바, 식품위생 검사기관은 생약재를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자가기준 및 규격의 검토나 이를 인정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15. 기타사항

영업허가 또는 신고관청은 영업자가 알아야 할 법령의 개정내용 및 지침사항을 해당 영업자에게 자체 위생교육 또는 단체위탁교육을 통하여나 공문을 통하여 미리 그 내용을 알려 법령의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